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2. (생략)</p> <p>13. “P/L신고”란 <u>별지 제1-2호 서식</u>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 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p> <p>14.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 <u>별지 제1-2호서식</u>----- ----- -----.</p> <p>14.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제4조(사무분장) ① 수입과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p>	<p>제4조(사무분장) ① ----- ----- -----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p> <p>1. 수입신고서(<u>별지 제1호 서식</u>, 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p> <p>2. ~ 18. (생략)</p> <p>19. <u>그밖에</u> 신고수리전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p> <p>② 납세심사담당과(이하 “심사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 제7호와 제15호의 사항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p> <p>1. ~ 14. (생략)</p> <p>15. 신고수리후 <u>제15조 제4항</u>에 따라 전자</p>	<p>-----.</p> <p>1. -----<u>별지 제1호서식</u>-----</p> <p>-----</p> <p>-----</p> <p>2. ~ 18. (현행과 같음)</p> <p>19. <u>그 밖에</u> -----</p> <p>-----</p> <p>② -----</p> <p>-----.</p> <p>-----</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 <u>제15조제4항</u>-----</p>	<p>○ 띄어쓰기 수정</p> <p>○ 띄어쓰기 수정</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이미지화하여 제출한 첨부서류 등록에 관한 사항</p> <p>16. <u>기타</u> 신고수리후 납세심사에 관한 사항</p> <p>③ ~ ⑥ (생략)</p>	<p>-----</p> <p>-----</p> <p>16. <u>그 밖에</u> 신고수리후 납세심사에 관한 사항</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 <u>그렇지 않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12조(수입신고) ① (생략)</p> <p>② 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p>	<p>제12조(수입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p> <p>가. ~ 바. (생략)</p> <p>사. <u>그밖에</u>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관 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u>아니하다고</u> 인정하는 물품</p> <p>2. ~ 16.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제2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u>의거</u>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10]”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p> <p>⑤ ~ ⑧ (생략)</p>	<p>-----.</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u>그 밖에</u> ----- ----- <u>않다고</u> ----- -----</p> <p>2. ~ 1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따라</u> ----- -----</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생략)</p> <p>② <u>수입신고 시 법 제327조제1항과 동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u></p>	<p>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수입신고 시 별지 제31호서식의 송품장은 법 제32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u></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무역서류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u></p> <p>1. 송품장 : <u>별지 제31호 서식</u></p> <p>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④ (생략)</p> <p>⑤ 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u>별지 제34호 서식</u>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u>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u></p> <p>③ ----- ----- ----- ----- ----- <u>그렇지 않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별지 제34호서식</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띄어쓰기 수정</p>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생략)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생략)</p> <p>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u>제56조제22호</u>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p> <p>나. ~ 타. (생략)</p> <p>5. (생략)</p> <p>6. <u>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u></p> <p>7. ~ 9. (생략)</p> <p>③ (생략)</p> <p>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성실도 등을 <u>감</u></p>	<p>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u>제56조제19호·제22호</u>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p> <p>나. ~ 타.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u>신고수리 전 반출대상물품(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u></p> <p>7. ~ 9.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까지 전자제출 확대</p> <p>○ AEO 업체 전자제출 확대</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안하여</u>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여도 통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고수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⑤ (생략)</p>	<p><u>고려하여</u>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생략)</p> <p>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u>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u></p>	<p>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u></p> <p><u>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u></p> <p><u>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u></p>	<p>○ 정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회피, 소액면세 적용 시도 차단으로 통관질서 확립 필요</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③ (생략)</p>	<p>3. <u>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u>별지 제6-2호 서식</u>)"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재해 <u>기타</u>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p> <p>3. ~ 4.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u>별지 제6-2호서식</u>)"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의</u>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p>	<p>제19조(신고의 각하) ①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p> <p>1. <u>거짓이나 그밖의</u>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p> <p>2. <u>멸각, 폐기</u>,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p> <p>3. ~ 5. (생략)</p> <p>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u>별지 제6-4호 서식</u>에 따라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p> <p>1. <u>거짓이나 그 밖의</u> -----</p> <p>-----</p> <p>2. <u>폐기</u>, -----</p> <p>-----</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p> <p>----- <u>별지 제6-4호서식</u>-----</p> <p>-----.</p>	<p>○ 띄어쓰기 수정</p> <p>○ 관세법상 ‘멸각’이 ‘폐기’로 정비됨</p> <p>○ 띄어쓰기 수정</p>
<p>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p> <p>1. ~ 13. (생략)</p> <p>14. <u>기타</u>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 ③ (생략)</p> <p>④ 수입과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p>	<p>제22조(심사방법) ① -----</p> <p>-----.</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u>그 밖에</u> -----</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한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심사부서에 즉시 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2. (생략) ⑤ (생략)</p>	<p>----- ----- ----- ----- ----- <u>그렇지 않다.</u></p> <p>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p>	
<p>제26조(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통관보류통지서(<u>별지 제2-1호 서식</u>)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 ② ~ ④ (생략)</p>	<p>제26조(통관보류) ① ----- ----- ----- ----- ----- <u>별지 제2-1호서식</u> ----- -----.</p> <p>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2조(검사방법)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u>기타</u> 수량과 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p>	<p>제32조(검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에</u>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①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 대상은 당일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p> <p>1. (생략)</p> <p>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p> <p>가. ~ 다. (생략)</p> <p>라. <u>기타</u>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p>	<p>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①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u>그 밖에</u> -----</p>	<p>○ 알기 쉬운 법령</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 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p> <p>② (생략)</p>	<p>-----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정비 기준 반영</p>
<p>제34조(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 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u>임시개청 신청(통보)서(별지 제28호서식)</u>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4조(임시개청) ① ----- ----- ----- 「국가공무원 <u>복무규정</u>」----- ----- <u>별지 제 28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인용법령명 수정 및 조문 정비</p>
<p>제36조(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① (생략)</p> <p>② 관세 등의 수납여부 확인은 수납기관에</p>	<p>제36조(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서 전자문서로 전송한 영수필통지에 의한 다. 다만,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없는 수납 기관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 관에서 <u>우송한</u>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 인하며, 이때 담당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 템에 수납사항을 등록해야 한다.</p>	<p>----- ----- ----- ----- <u>우편으로 보낸</u> ----- -----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37조(신고필증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 를 수리한 때에는 「<u>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u>」에 따른 <u>세관특수 청인을</u>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 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p> <p>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 로 교부할 수 없는 <u>경우</u> : 수입신고서에 세 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p> <p>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99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p>	<p>제37조(신고필증교부) ① ----- ----- <u>세관특수청인을</u> ----- ----- ----- ----- ----- 1. ----- ----- <u>경우</u>: ----- ----- 2. ----- -----</p>	<p>○ 해당 훈령 폐지 반영('05.8.18.)</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u>경우</u>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p> <p>② 제27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 자료를 <u>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u>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p> <p>③ (생략)</p>	<p>----- ----- <u>경우</u>: ----- ----- ---- <u>별표 3</u> ----- -----.</p> <p>② ----- ----- -----.</p> <p>--- <u>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u>-----.</p> <p>③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 조문 정비</p> <p>○ 조문 정비</p>
<p>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p>	<p>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 -----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p>	<p>○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특례 고시 제17조 개정사항 반영</p>
<p>제43조(전자송달) ① 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p> <p>② (생략)</p>	<p>제43조(전자송달) ①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77조(해체·절단 등 작업대상물품) <u>법 제159조 제3항</u>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 중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p> <p>1. ~ 3. (생략)</p>	<p>제77조(해체·절단 등 작업대상물품) <u>법 제159조 제3항</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제95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폐유"라 함은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 <u>각목</u>의 물품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u>기타</u> 폐유</p> <p>2. ~ 3. (생략)</p>	<p>제95조(용어의 정의) ----- -----.</p> <p>1. ----- --- <u>각 목</u>-----.</p> <p>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u>그 밖의</u> -----</p> <p>2. ~ 3.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96조(신고인)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p>	<p>제96조(신고인) -----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 3. (생략)</p> <p>4. <u>기타</u>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97조(신고) ① ~ ② (생략)</p> <p>③ 신고품명은 “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 “선저폐유, 슬러지, 폐윤활유, 유창청소 폐유, <u>기타 폐유</u>”로 제95조제1호 <u>각목</u>의 용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97조(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그 밖의</u> ----- <u>각목</u>-----</p> <p>-----.</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띄어쓰기 수정</p>
<p>제119조(통관표지의 관리) ① (생략)</p> <p>② 통관표지는 각 세관 화물관리담당과에서 관리 운용하되 통관표지가 필요한 <u>기타</u> 해당과에도 적정량을 교부한다.</p> <p>③ 화물관리담당과와 <u>기타</u>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는 <u>통관표지의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u>을 갖추어 두고 통관표지의 반출입수량, 반출입일시, 제작일련번호</p>	<p>제119조(통관표지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그 밖의</u> 해당과에도 적정량을 교부한다.</p> <p>③ ----- <u>그 밖에</u>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는 <u>별지 제15호서식의 통관표지의 관리대장</u>-----</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및 재고현황 등을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p> <p>④ 각 세관 화물관리 담당과장과 <u>기타</u>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장은 제3항의 관리 및 기록사항을 매월 말 확인해야 한다.</p> <p>⑤ (생략)</p>	<p>-----.</p> <p>④ ----- <u>그 밖에</u> -----</p> <p>-----.</p> <p>⑤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p> <p>①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체나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u>각목</u>의 요건을 갖춘 자</p> <p>가. · 나. (생략)</p> <p>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u>환특법</u>」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p>	<p>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p> <p>① -----</p> <p>-----.</p> <p>1. -----</p> <p>-- 「<u>외국인투자 촉진법</u>」 -----</p> <p>-----</p> <p><u>각 목</u>-----</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p> <p>----- <u>환특법 제23조</u> -----</p> <p>-----.</p>	<p>○ 띄어쓰기 수정</p> <p>○ 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생략)</p> <p>2. (생략)</p> <p>②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시설재와 원부자재,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 자나 같은 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물품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잉여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p> <p>1. ~ 5. (생략)</p> <p>6. <u>기타</u> 통관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u>아니하다고</u>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p>	<p>----- -----.</p> <p>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 <u>않다고</u>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품	--	
<p>제124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p> <p>① 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u>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u> 2부를 작성요령(별지 제22-1호)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1. 민원인 제출서류</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p> <p>나. ~ 다. (생략)</p> <p>라. <u>기타</u>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2. (생략)</p>	<p>제124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p> <p>① ----- <u>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u> ----- ----- ----- ----- ----- ----- 1. ----- 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1조----- -----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u>그 밖에</u>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현행과 같음)</p>	<p>○ 조문 정비</p> <p>○ 인용법령 띄어쓰기 수정</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기타의</u>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p> <p>③ 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u>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3호서식)</u>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u> ----- -----</p> <p>③ ----- ----- <u>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u> -----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조문 정비</p>
<p>제125조 ① 제124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p> <p>1. 신청업체가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p>	<p>제125조 ① ----- ----- -----.</p> <p>1.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가. ~ 라. (생략)</p> <p>마. 제조업체이거나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u>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u>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1부를 통지하고, 지정내용을 즉시 전산등록해야 한다.</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제조업체이거나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u>별지 제22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나 별지 제23호서식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u>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1부를 통지하고, 지정내용을 즉시 전산등록해야 한다.</p>	<p>○ 띄어쓰기 수정</p> <p>○ 조문 정비</p>
<p>제126조(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p> <p>① (생략)</p> <p>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p>	<p>제126조(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월 전까지 <u>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u>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u>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u>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p>	<p>----- <u>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별지 제25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신청(결과통보)서</u>----- ----- -----.</p>	<p>○ 조문 정비 및 별지서식명 수정</p> <p>○ 조문 정비 및 별지서식명 수정</p>
<p>제127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 ① 즉시반출업체는 제1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u>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u>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p>	<p>제127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 ① ----- ----- ----- <u>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u> ----- -----.</p>	<p>○ 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변경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행정정보공동이 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내용을 조회· 심사해야 한다.</p> <p>1. ~ 2.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고내용이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p> <p>1. <u>제1항제1호 가목</u>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전에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을 등록해 제하고 변경 후 상호로 재등록</p> <p>2. <u>제1항제1호 나목과 제1항제2호 나목</u>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내용으로 수정등 록</p> <p>3. <u>제1항제2호 가목</u>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지정 취소</p> <p>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p>	<p>-----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제1항제1호가목</u>-----</p> <p>-----</p> <p>-----</p> <p>2. <u>제1항제1호나목과 제1항제2호나목</u>-----</p> <p>----- -----</p> <p>3. <u>제1항제2호가목</u>----- -----</p> <p>③ -----</p>	<p>○ 띄어쓰기 수정</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업체와 물품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u>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u>에 담당자의 도장(별표 8)을 찍어서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p>	<p>----- ----- <u>별지 제24호서식의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u>----- -----.</p>	<p>○ 조문 정비</p>
<p>제131조(반출신고) ① ~ ② (생략) ③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u>별지 제26-2호 서식의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u>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제무역기에 적재되어 있는 잔존유에 대하여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u>별지 제26-3호서식의 잔존유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서</u>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31조(반출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별지 제26-2호서식</u>----- -----. ④ ----- ----- <u>별지 제26-3호서식</u>----- -----.</p>	<p>○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p>
<p>제132조(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①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이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p>	<p>제132조(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①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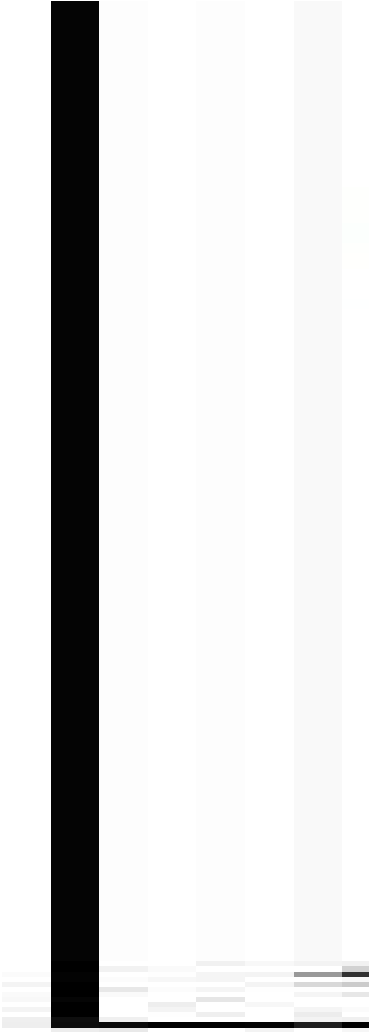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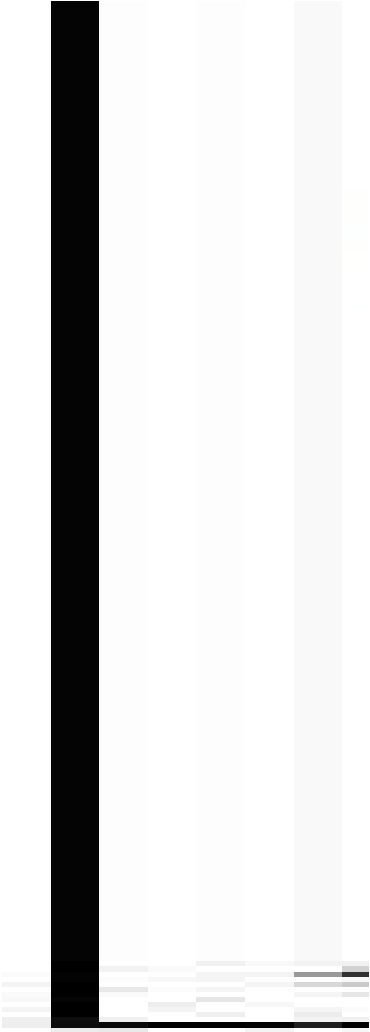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출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u>별지 제 27-1호 서식</u>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u>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7-1호 서식)</u>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p> <p>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u>별지 제 27-1호서식</u>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u>별지 제27-1호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u>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 띄어쓰기 수정</p> <p>○ 조문 정비</p>
<p>제136조(수입신고) ①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일로부터 <u>10일 이내</u>(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u>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u>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p>	<p>제136조(수입신고) ① -----</p> <p>-----</p> <p><u>10일 이내</u>-----</p> <p>-- <u>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서</u>-----</p> <p>-----.</p>	<p>○ 띄어쓰기 수정</p> <p>○ 조문 정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1. ~ 2.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의 신고번호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신고하게 되는 때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⑥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그렇지 않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141조(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①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때 종결한다.</p> <p>1. · 2. (생략)</p> <p>3. <u>기타</u> 세관장이 종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p> <p>② (생략)</p>	<p>제141조(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제14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p> <p>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p>제143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p> <p>① ----- -----</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p> <p>1. ~ 8. (생략)</p> <p>9. <u>기타</u>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u>제14조 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해야 한다.</p>	<p>-----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4조 제1항</u> ----- -----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띄어쓰기 수정</p>
<p>제146조(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p> <p>1. <u>제13조 제2항</u>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의 선별에 관한 사항</p> <p>2. ~ 3. (생략)</p>	<p>제146조(권한의 위임) ----- ----- -----.</p> <p>1. <u>제13조제2항</u>----- -----</p> <p>2. ~ 3.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신설></p>	<p>부칙 (관세청 고시 제2023-00호, '23.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부칙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별표 4] 납부(고지)번호 체계</p> <table border="1" data-bbox="174 379 927 454"> <tr> <td>0</td><td>4</td><td>0</td> <td>1</td><td>1</td> <td>1</td><td>5</td> <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 </tr> <tr> <td colspan="3">세관부호</td> <td colspan="2">고지유형</td> <td colspan="2">연도</td> <td colspan="8">일련번호</td> </tr> </table> <p>0. 일괄납부(일괄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 일괄납부(월별납부) - 02 : 일괄납부(경정/추징) - 03 : 일괄납부(통합납부) - 04 : 일괄납부(보세건설장) - 05 : 일괄납부(수리전반출) <p>1.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 일반수입신고 - 12 : 특송간이 - 13 : 우편물 - 14 : 이사화물 - 15 : 전자상거래 <p>2. 수정/보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 수정신고 - 22 : 보정신고 <p>3. 분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 분할납부 - 32 : 2차납세의무자 분할납부 <p>4. 추징/경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 추징 - 42 : 경정 <p>5. 수입대체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 : 수입대체경비 <p>6. 세외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 : 과태료 - 62 : 과징금 - 63 : 벌금 - 64 : 징계부과금 - 65 : 몰수추징금 - 66 : 면허및수수료 - 67 : 설치·운영특허수수료 - 69 : 기타 <p>7. 여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 : 여행자(현장통관) - 72 : 여행자(유치후통관) - 73 : 여행자(추징) - 74 : 여행자(경정) <p>8. 체화공매(제세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 : 체화공매 <p>9. 정부보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 현금담보 - 92 : 벌금예납금 - 93 : 체화공매대금 - 94 : 위탁판매대금 	0	4	0	1	1	1	5	1	2	3	4	5	6	7	8	세관부호			고지유형		연도		일련번호								<p>[별표 4] 납부(고지)번호 체계</p> <table border="1" data-bbox="958 379 1711 454"> <tr> <td>0</td><td>4</td><td>0</td> <td>1</td><td>1</td> <td>1</td><td>5</td> <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 </tr> <tr> <td colspan="3">세관부호</td> <td colspan="2">고지유형</td> <td colspan="2">연도</td> <td colspan="8">일련번호</td> </tr> </table> <p>0. 일괄납부(일괄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 일괄납부(월별납부) - 02 : 일괄납부(경정/추징) - 03 : 일괄납부(통합납부) - 04 : 일괄납부(보세건설장) - 05 : 일괄납부(수리전반출) <p>1.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 일반수입신고 - 12 : 특송간이 - 13 : 우편물 - 14 : 이사화물 - 15 : 전자상거래 <p>2. 수정/보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 수정신고 - 22 : 보정신고 <p>3. 분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 분할납부 - 32 : 2차납세의무자 분할납부 <p>4. 추징/경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 추징 - 42 : 경정 <p>5. 수입대체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 : 수입대체경비 <p>6. 세외수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 : 과태료 - 62 : 과징금 - 63 : 벌금 - 64 : 징계부과금 - 65 : 몰수추징금 - 66 : 면허및수수료 - 67 : 설치·운영특허수수료 - 68 : 기타보전금(부정이익환수 등) - 69 : 기타 <p>7. 여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 : 여행자(현장통관) - 72 : 여행자(유치후통관) - 73 : 여행자(추징) - 74 : 여행자(경정) <p>8. 체화공매(제세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 : 체화공매 <p>9. 정부보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 현금담보 - 92 : 벌금예납금 - 93 : 체화공매대금 - 94 : 위탁판매대금 	0	4	0	1	1	1	5	1	2	3	4	5	6	7	8	세관부호			고지유형		연도		일련번호								<p>○ 납부(고지)번호 체계 신규 추가</p>
0	4	0	1	1	1	5	1	2	3	4	5	6	7	8																																																
세관부호			고지유형		연도		일련번호																																																							
0	4	0	1	1	1	5	1	2	3	4	5	6	7	8																																																
세관부호			고지유형		연도		일련번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별지 제5호 서식)</p> 	<p>(별지 제5호서식)</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신 설>

가산세 등 산출근거

(2쪽)

가산세 종류별	과세 품목	과세 표준	산출근거(비율)	가산세	
가산세	일반	관세	관	부록시역의 (가)	관
		부가가치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자영업비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주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에너지환경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농축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부당누진	관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부가가치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자영업비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주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에너지환경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농축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납부미연(보급이자)	관세	관	부속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관	부부·미납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부가가치세	관	부속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관	부부·미납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자영업비세	관	부속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관	부부·미납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주세	관	부속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관	부부·미납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교육에너지환경세	관	부속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관	부부·미납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교육세	관	부속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관	부부·미납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농축세	관	부속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관	부부·미납시역*경과일수 (1)일의 (가)	관	
부당누진	일반	관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부가가치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자영업비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주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에너지환경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농축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부당누진	일반	관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부가가치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자영업비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주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에너지환경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교육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농축세	관	부속시역의 (가)	관
신규미연	일반·특별 지방에서 활동 한 경우	관세	관	관세 표준의 (가)	관
신규산출세	관세	관	관세의 (가)	관	
과수출세	관세	관	관세의 (가)	관	
과다납세	후대료	관세 내국세	관	체세의 (가)	관
미납	이차물류	관세 내국세	관	체세의 (가)	관
과다납금 가산금	정원 확정가산금	관세 등	관	과다납금*경과일수의 (가)	관
과다납금 가산금	일반	관세 등	관	과다납금*경과일수의 (가)	관
	자신신고(과입) 미내	관세 등	관	과다납금*경과일수의 (가)	관
	자신신고(과입) 경과	관세 등	관	과다납금*경과일수의 (가)	관
	자진신고(예외)	관세 등	관	과다납금*경과일수의 (가)	관

※ 납부지연가산세 미자를 적용기간(관세법 시행령 제39조)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1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0

○ 납세자에게 가산세 산출근거 상세 내역 안내 필요

현 행

(별지 제8호 서식)

(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세(납부자용)

납부 구분	납부 대상	납부 일자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납부 부서	납부 일자	납부 금액

수입금 수령 계좌 입출	계좌 번호	계좌 예금주	계좌 잔액	계좌 잔액
-----------------	-------	--------	-------	-------

* 수입금 수령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한 내용을 표시 경신하여야 하며 수입금 수령서에 불일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 고령호	(대표자)명	성명	직업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 이 납부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납부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수납기관용)

납부 구분	납부 대상	납부 일자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납부 부서	납부 일자	납부 금액

수입금 수령 계좌 입출	계좌 번호	계좌 예금주	계좌 잔액	계좌 잔액
-----------------	-------	--------	-------	-------

* 수입금 수령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한 내용을 표시 경신하여야 하며 수입금 수령서에 불일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 고령호	(대표자)명	성명	직업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 이 납부세(수납기관용) 서류를 세관공무실 서장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세(납부자용)

납부 구분	납부 대상	납부 일자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납부 부서	납부 일자	납부 금액

수입금 수령 계좌 입출	계좌 번호	계좌 예금주	계좌 잔액	계좌 잔액
-----------------	-------	--------	-------	-------

* 수입금 수령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한 내용을 표시 경신하여야 하며 수입금 수령서에 불일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 고령호	(대표자)명	성명	직업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 이 납부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납부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수납기관용)

납부 구분	납부 대상	납부 일자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납부 장소	납부 부서	납부 일자	납부 금액

수입금 수령 계좌 입출	계좌 번호	계좌 예금주	계좌 잔액	계좌 잔액
-----------------	-------	--------	-------	-------

* 수입금 수령서는 위의 내용을 반영한 내용을 표시 경신하여야 하며 수입금 수령서에 불일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 고령호	(대표자)명	성명	직업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납부일지

* 이 납부세(수납기관용) 서류를 세관공무실 서장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현행

가산세 등 산출근거

(2쪽)

가산세 종류별	관세 번호	규제표준	산출근거(비율)	가산세
과소신고	일반	관세	주목지역의 (7%)	원
	부당구정	관세 내국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주목지역의 (7%)	원 원
납부지역	관세	관세	주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부당구정	내국세	관세	주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신고미준	일반·특별	관세	과세표준의 (7%)	원
	일반관세·특별	관세	과세표준의 (7%)	원
과소신고·불이행	관세	관세	관세의 (7%)	원
과다납부 등 미신고	휴대물	관세·내국세	체세의 (7%)	원
	이사용물	관세·내국세	체세의 (7%)	원
과다한금 가산금	관세 등	관세	과다한금분*경과일수비 (7%)	원

개정안

가산세 등 산출근거

(2쪽)

가산세 종류별	관세 번호	규제표준	산출근거(비율)	가산세
과소신고	일반	관세	주목지역의 (7%)	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계별소비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주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과동에너지한정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교육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부당구정	관세	주목지역의 (7%)	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계별소비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주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과동에너지한정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교육세	과소신고분 납부지역의 (7%)	원
납부지역(포괄이자)	관세	주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부가가치세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부당구정	관세	주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부가가치세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주목·미납지역*경과일수 (1일씩) (7%)	원	
신고미준	일반·특별	관세	과세표준의 (7%)	원
	일반관세·특별	관세	과세표준의 (7%)	원
과소신고·불이행	관세	관세	관세의 (7%)	원
과다납부 등 미신고	휴대물	관세·내국세	체세의 (7%)	원
	이사용물	관세·내국세	체세의 (7%)	원
과다한금 가산금	관세 등	관세	과다한금분*경과일수비 (7%)	원
과다납부 등 가산금	관세 등	정원·확정가액신고	과다한금분*경과일수비 (7%)	원
		일반	과다한금분*경과일수비 (7%)	원
		자선신고(개발·미내)	과다한금분*경과일수비 (7%)	원
		자선신고(개발·경과)	과다한금분*경과일수비 (7%)	원
		자선신고(예외)	과다한금분*경과일수비 (7%)	원

※ 납부지연가산세 미자를 적용기간(관세법 시행령 제39조)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1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0

○ 납세자에게 가산세 산출근거 상세 내역 안내 필요